

January 13,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17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20. 1. 2. ~ 1. 8.)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1] 2020년 R&D 투자방향 발표

2020. 1. 2. 약 5조 1,929억원 규모의 2020년 과학기술 ICT 분야 R&D 투자방향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나노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신규 382억원, ② DNA+ 드론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67억원, ③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신규 130억원, ④ 5G기반 사물인터넷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신규 53억원 투자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RnD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발표](#)



[과기부2] 5G 단말 장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표

2020. 1. 3. 5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②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 ③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 ④ 5G 기업들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로](#)



[과기부3] 데이터 개방 활용 확대 정책 발표

2020. 1. 6. 양질의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 ① 카드 소비, 보험 대출 상품, 감정평가 등 80여종의 데이터 개방, ② 유동인구, 상주인구 등 인구 데이터 110여종 데이터 개방, ③ 식당 영업시간 조정, 홍보, 타겟 메뉴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상권분석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과기부4]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발표

2020. 1. 8.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0년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신약 타겟발굴 및 검증을 위한 신규사업에 614억원, ②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에 295억원,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기술개발에 55.5억원 투자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착수](#)



[중기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발표

2020. 1. 3. 창업국가 조성을 위하여 중기부를 포함한 16개 부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517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2020년 발굴된 사업으로, ①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 사업(450억원), ②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사업(116억원), ③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고자료] 2020년 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참고자료] 2020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기업이 R&D(연구·인력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자 지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중견·중소 기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10곳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11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 그러나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부산의 경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고, 충북의 경우 진천군, 음성군 전북의 경우 전주시, 완주군 등 각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음. 나머지 혁신도시 7곳은 각 한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대구는 동구, 광주·전남은 나주시, 울산은 중구, 강원은 원주시, 경북은 김천시, 경남은 진주시, 제주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개발예정지구가 한 곳으로 지정된 경우 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근 지역의 인구, 법인 등의 ‘빨대효과’가 유발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고,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3.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2020. 1. 9. 제374회 임시국회에서는 총 19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소개 드립니다.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법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파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 사 회의 이 사 전 원 을 특 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 지 아니하도록 의무화 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 핵심부 품 중심의 국방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의 외연 확대 및 지속가능한 방산일자리 를 창출 보장, 한정된 국내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전향적인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교육문화체육관 광위원장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디지털 시대 저작물 이용한 경을 합리적으로 정비,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 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 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 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등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의 요건 보완,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 경 제도 도입,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 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 의 규정 신설,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 도의 법률로 제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정부	사업구역에서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또는 주거 휴양 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시설용지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 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사업자가 아닌 열 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 규정,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 사업자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국유·공유재산의 임대시 원상회복의무를 부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취소·철회 등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유·공유재산 매각시 조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신설	
소상공인기본법안 (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고, 소상공인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설치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전체 펀드 투자금을 합산하여 투자비율 비율을 산정하는 규정을 삭제, 정부재원(모태펀드)이 출자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에는 일반 민간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별도의 투자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 벤 처기업 확인요건 중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 벤 처기업확인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 등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 술신탁관리 업무를 추가, 기술보호 업무와 관련 한 수수료 근거 마련,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 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관영의원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 법제화, 상호출자 및 채무 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7조원으로 완 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 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환자 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 자격 요건에 약사를 포함, 지역환자안전센터 의 지정 근거 마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으 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결함차량의 화재 반복 등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 근거 및 판매 중지 근거 등을 신설, 결함 시정조치 요건 중 “안전운행에 지장 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 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결함조 사 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 여하며 및 특정 상황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 거나 결함을 알고서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 상향하며, 화재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성능시 험대행자가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 거를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데이터3법-	행정안전위원장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 강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데이터3법-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데이터3법-	정무위원장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 02-316-1777

✉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